



식육의 부위별·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 안내

소비홍보팀 차장대우 이 상 근

1. 개정이유

축산법시행규칙(2004.8.17)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이 개정되고, 돼지고기의 육질을 판정하여 표시하는 냉도체 판정방법이 '04.7.1부터 가능함에 따라 이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과 아울러 그동안 규정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

2. 주요내용

- 가. 고품질 쇠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시 1*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소매단계에서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, 쇠고기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부위를 확대하며, 등급표시 중 특상등급, 상등급, 중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음. 또한, 돼지고기의 육질을 판정하는 냉도체 판정방법에 따라 판정한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1*등급, 1등급, 2등급, 3등급을 소매단계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(제5조)
- 나. 식육판매업소는 포장육을 직접 제조·가공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, 쇠고기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부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특상등급, 상등급, 중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둠 (제7조 및 부칙)

3. 식육의 부위별·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내용 신·구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제5조(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) ① 별표3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<u>대분할 부위인 등심, 채끝과 소분할 부위인 윗등심살, 아랫등심살, 꽃등심살, 살치살 및 채끝살</u>은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발급한 당해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(이하 "등급판정 확인서"라 한다)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<u>그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(안심, 목심, 앞다리, 우둔, 설도, 양지, 사태, 갈비)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표시</u>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) ① 별표3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<u>대분할 부위인 안심, 등심, 채끝, 양지,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</u>는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발급한 당해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(이하 "등급판정확인서"라 한다)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<u>그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(목심, 앞다리, 우둔, 설도, 사태)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표시</u>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.</p>	<p>브랜드화 촉진 및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하여 의무표시부위를 확대</p>
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의 등급표시는 1'등급, 1등급, 2등급, 3등급, 등외로 표시하거나, 1'등급은 특상등급(1'), 1등급은 특상등급(1), 2등급은 상등급, 3등급은 중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A등급, B등급, C등급, D등급, E등급으로 표시한다.</p> <p><년서규정 신설>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의 등급표시는 1' 등급, 1 등급, 1등급, 2등급, 3등급, 등외로 표시하며, 돼지고기는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A등급, B등급, C등급, D등급, E등급으로 표시한다. 다만, 돼지고체 중 추가로 냉도체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A(1)등급, A(1)등급, A(2)등급, A(3)등급, B(1)등급, B(1)등급, B(2)등급, B(3)등급, C(1)등급, C(1)등급, C(2)등급, C(3)등급, D(1)등급, D(1)등급, D(2)등급, D(3)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.</p>	<p>등급기준개정에 따라 1' 등급 신설</p> <p>돼지고체 판정방법 제도화</p>
<p>제7조(식육판매 표시판 설치 등) ①~④ 생략</p> <p>⑤ 식육판매업소가 포장육을 직접 제조·가공판매하거나 또는 육가공장에서 제조·가공된 포장육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지 등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식육판매 표시판 설치 등) ①~④ 현행과 같음</p> <p>⑤ <삭제></p> <p>부칙</p>	<p>식육판매업소는 포장육을 제조·생산할 수 없음</p>
	<p>이 고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의 개정부분과 제5조제2항의 쇠고기 등급표시중 "특상등급, 상등급, 중등급"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영업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</p>